

사단법인 오픈넷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

+ 취지

-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에 따라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고시(안) 각 조문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밝힘

+ 검토 의견

1.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절차 규정 미비

고시(안)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③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또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결합 목적, 용도, 결과 및 발표시점 등 공적통제를 위한 기준, 절차 미비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해 공적 통제의 방식을 선택한 만큼, 공적 통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서 과학적 목적에 대한 설명 및 연구결과의 향후 활용 계획 및 연구결과 발표시점 등을 <결합신청서>에 적도록 하여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학술적 관행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연구결과가 공개될지에 대해 심사한다는 내용과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공적 통제를 위한 공시 의무화 필요

제6조(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 현재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 기준은 의무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주체가 적어도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제3자공개 및 목적 외 이용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개된 절차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정보주체는 가명화된 자신의 가명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결합되어 활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함. 이에 결합의 경우 적어도 결합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결합과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 해당 목적에 맞게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공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함.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고객정보를 SK텔레콤의 고객정보와 결합했다'라는 공지를 하여 각 고객이 원하면 자신의 정보가 결합되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가명정보의 결합신청 사후 사전 통제 절차 미비

고시(안) 제8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등) ① 결합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결합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할 수 있다.

- 1) 결합 전 가명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사 절차 필요
 -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제공받은 속성정보를 결합하기 전에 가명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물론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가명화를 명확하게 철저하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반이 발생하므로 스스로 조심할 동기는 있음.
 - 그러나 가명화하여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전반에 대해서는 공적 통제가 없지만 결합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공적 통제가 있는 이상 결합전문기관이 스스로 결합행위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명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음. 가명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결합전문기관 스스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음.

- 특히 결합을 통해 재식별위험은 더 높아질 수 있음. 예를 들어 k익명성이 각 3인 정보를 받아서 결합할 경우 k익명성이 2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은 더욱 높기 때문에 결합전문기관은 스스로 익명화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 개인정보처리자,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이 상호 동일하거나 상호소유관계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별도 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해당 개인에 대해 더 많은 속성을 알게 하는 행위도 포함됨.
- 이 ‘결합’ 행위를 2020년 2월 4일 공표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가 정한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통제 하에 두기로 한 것임. 그렇다면 민간에게 공적 통제를 위탁할 때 요구되는 각종 규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이 상호 동일하거나 상호소유관계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별도 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공동출자하여 만든 회사가 결합전문기관지정을 받을 수는 없음. 특히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은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결합키관리기관에게 연계키 생성을 위한 개인식별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결합키관리기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결합전문기관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또 원칙적으로 가명화된 속성정보만을 다루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됨.

4. 반출승인 기준 미비

고시(안) 제11조(반출승인)③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2. 반출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것
3. 반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4. 반출 정보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 결합정보의 반출은 지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용되어야 할 것임. 이번 고시(안)은 ‘관련성’이라는 포괄적 기준,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만

함으로써 반출을 원하는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결합해서 식별가능한
정보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인지 그 자체만으로는 불분명하고 또한 이 같은
기준마저도 고려할 사항으로 제시할 뿐 의무 규정도 아님.

연락담당자: 박경신 unbeatenpath.park@gmail.com